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측량성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심사수탁기관은 성과심사 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간행, 지하공간통합 지도 간행 등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고, 공공측량성과 현지심사시 기지점(3점 이상)을 포함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지점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음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측량업 상속신고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큰글씨 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와 측량·지적 업무의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협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측량업 상속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영 제10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4조제5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2호하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하목) 중 “과목까지의 규정에”를 “너목까지의 규정에”로, 같은 목 중 “과목까지의 규정과”를 “너목까지의 규정과”로, 같은 목 중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무인비행장치 측량

항목	단위	심사인원	비고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0.25km ²	0.01	고급기술인
사진기준점		0.02	고급기술인
수치도화		0.58	고급기능사(도화)

거. 정밀도로지도

항 목	단 위	심사인원	비 고
정밀도로지도 (실내)	1km	0.28명	고급기술인

※ 정밀도로지도 현지심사는 바. 지하시설물도(공동구 및 종류별)중 2)의 도로시설물 측량 현지심사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너. 지하공간통합지도

항 목	단위	심사인원	비 고
3차원 지반	1km ²	0.35명	고급기술인
3차원 지하시설물	1km	0.26명	고급기술인

※ 3차원 지하구조물에 대한 심사는 바. 지하시설물도(공동구 및 종류별)의 성과심사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더. 그 밖의 측량성과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번호 16)17) 및 18)중 가)나)다)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비율
16) 무인비행장치측량	성과의 20%
17)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20%

18) 지하공간통합지도	
가) 3차원 지하구조물	성 과 의 20%
나) 3차원 지반(시추공)	성 과 의 20%
다) 3차원 지하시설물	성 과 의 1%

별표 13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준점의 위치정확도 심사를 위하여 현지심사 과정에서 기지점을 관측하는 경우 관측한 기지점과 미지점의 수량을 합산하여 성과심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지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 물건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집합건물	APT · 연립 · B/D	동	층
신청 구분	☐ 열람 ☐ 등본 발급 ☐ 증명서 발급 ※ 발급 시 부수를 ☐ 안에 숫자로 표시			
지적 공부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 종합형은 연혁을 포함한 모든 정보, 맞춤형은 √로 표시한 정보만 발급				
종합형		☐ 토지	☐ 토지, 건축물	☐ 토지, 집합건물
맞춤형	· 토지(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 기본사항	☐		
	· 토지(지목, 면적 등) · 건물(주용도, 층수 등) 기본사항		☐	☐
	·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 · 건축물 소유자 현황		☐	☐
	· 토지 · 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	☐	☐
	· 토지 · 건축물 표시 변동 연혁	☐	☐	☐
	· 토지 · 건축물 소유자 변동 연혁	☐	☐	☐
	· 가격 연혁	☐	☐	☐
	· 지적(임야)도	☐	☐	☐
	·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	☐	☐
	· 건축물 층별 현황		☐	☐
	· 건축물 현황도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읍 · 면 · 동장 귀하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는 뒤쪽에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구분		신청 종목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 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 필지)	300원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 필지)	500원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 cm)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 ----- ----- ----- ----- ----- ----- ----- ----- ----- ----. <u>다만, 측량업 상속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u>영 제104조제1항</u> 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① <u>영 제104조제2항</u> ----- ----- ----- ----- ----- -----		

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4조제5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